

#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5. 10. 18 (화) 평창군수(농업경영과장)

나. 회부일자 : 2005. 10. 25(화)

다. 상정일자 : 2005. 10. 25(화) 제12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
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4. 10. 25) 상정·수정가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김인섭 농업경영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·특산물에 대하여 평창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, 우리군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과 가격을 차별화하여 우리군 상표에 대한 인지도를 강화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“평창군농특산물 품질관리위원회”를 15인 이내로 구성함. (안 제4조 및 제5조)
- 인증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둠. (안 제9조)
- 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품질관리원은 현지여건을 조사·심사함. (안 제10조)
- 인증상표의 유효기간은 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하되, 당해년도에 생산된 농·특산물에 한함. (안 제12조)
- 인증상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·출하·유통 과정을 조사할 수 있음. (안 제13조)
  -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관에 위임

#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함정호)

가.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·특산물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품질 향상으로 경쟁력을 높이고자, 평창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평창군수 품질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임

나. 조례 검토결과

- 안 제3조에서 평창군수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적용범위를 "상표법 제41조"에 의거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품목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이에 특허청에 등록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봄

▶ 평창군 특허청 등록 상품 총 26류 369품목 중 5개류 95품목

- 안 제13조 제2항에 사후관리에 따른 생산자에 대한 "변상조치"에 대하여는 소비자들에게 평창군 우수 농·특산물에 대한 신뢰감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보다 명확한 대응 규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<p>○ 이 조례안을 만들려는 취지가</p> <p>○ 안 7조 4항과 관련 상표권에 대하여는 시급성을 요하는게 있을것 같지 않음.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?</p>	<p>○ 우리군 농·특산물에 대한 경쟁력 향상 및 가격 차별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</p> <p>○ 위원님의 생각이 옳다고 봄.</p>

**5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**

**6. 소수의견의 요지 :없음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

**【붙임】 :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.**

#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안 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5년 10월 25일  
제안자 : 조례심사특별위원회

## 1. 수정이유

- 가. 안 제7조 제4항과 관련 상표권에 관하여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과 관련, 상표권에 대하여는 시급성을 요하는 게 있지 않을 것 같고 이를 자의적 해석으로 적용하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우려되어
- 나. 조문을 적법하게 수정하여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고치기 위함.

## 2. 수정주요골자

- 가. 안 제7조 제4항 "삭제"하고 안 동조 제5항을 제4항으로 "수정"

#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안 수 정 안

제안년월일 : 2005년 10월 25일

제 안 자 : 조례심사특별위원회

"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안"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 제4항을 삭제하고, 동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.

